

진료비 청구 및 지급안내

의료보험조합연합회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심사기구 통합에 따른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처 등이 변경되어 시행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록하오니 198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가 아닌 청구분부터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심사 통합의 개요

- 1988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 등 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와 관련, 진료비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던 심사업무가 의료보험연합회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농어촌지역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진료비 심사물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처리하여 진료비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의료보험연합회 산하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5개지부가 설치되어 현행 중앙집중심사체제가 지역분산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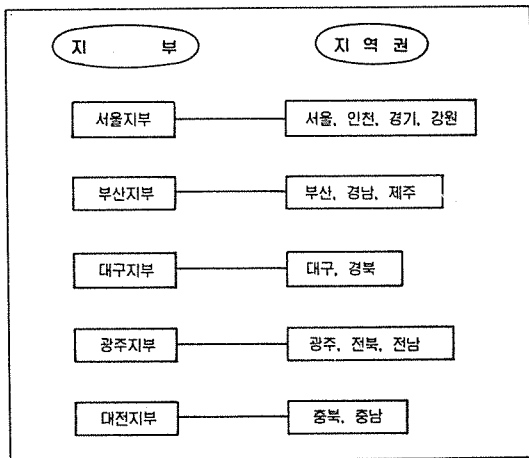
지역조합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역의료보험의 3차 진료기관은 연합회본부로 청구)

- '88년 1월부터의 진료비청구는 진료일기준이 아니므로 88년 1월 1일 이전 진료분이라 할지라도 연합회본부 및 지부, 또는 지역조합에 청구하면 됩니다.
- 접수편의상 연합회본부와 연합회 서울지부의 접수처는 공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청구방법

- 진료비청구는 직송 또는 우송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진료비명세서는 ① 직장 및 직종 ② 지역조합분(지역조합별분철) ③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분 ④ 의료보호분등 네가지로 구분하여 분철하여야 합니다.
- 직장 및 직종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분은 종전 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진료과목별 분철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합철하되 가급적 진료과목별(내과분야, 외과분야, 산소아과분야, 안이비인후과분야, 피부비뇨기과분야, 기타분야, 치과분야)로 진료비명세서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명세서를 접수하게되면 접수처에서 의료보험연합회 명의의 접수증을 발급해 드리거나 우송해 드립니다.

〈그림 1.지부별 지역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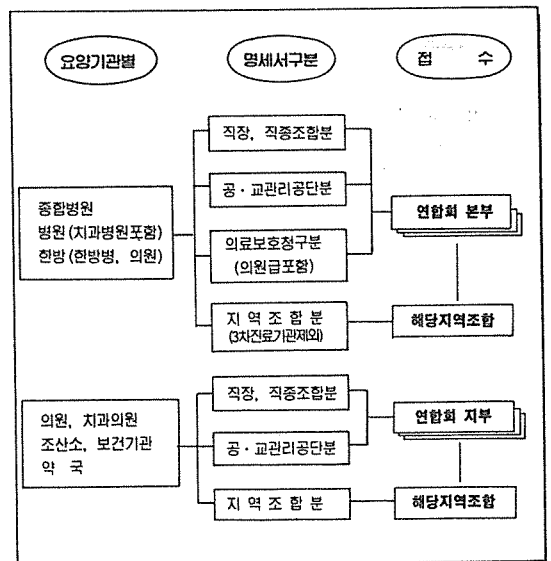


진료비의 청구

청구처

- '88년 1월부터 의료보험관련 진료비청구는 병원급 요양기관과 한방요양기관(한방병·의원)은 연합회 본부에 청구하여야 하며, 의원급 요양기관은 5개 지역별로 연합회 지부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각지부 사무과에서 접수실운영)
- 총래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되던 의료보호진료비는 연합회본부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기존 6개지역의료보험조합(목포시조합포함)과 88년 1월부터 보험급여가 시작되는 군단위 134개 지역의료보험 수진자의 진료비청구는 병·의원 모두 해당

〈그림 2.진료비 청구체계〉



진료비를 청구한 곳으로 접수하여야 하되 공·교관리공단 수진자의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단 관리부로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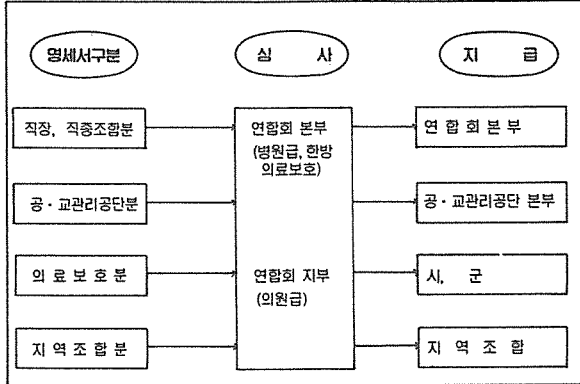
진료비의 심사·지급

- 연합회 본부에서 접수된 진료비명세서는 본부에서, 연합회 지부에서 접수된 진료비명세서는 지부에서 진료비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역조합의 보건기관 진료비심사는 해당 지역조합에서 담당)
- 본부에서는 중앙심사위원회적인 진료비심사위원회를 지부에서는 지역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되어 지역의료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 심사가 끝난 후에는 의료보험연합회장 명의의 진료비심사지급통보서와 진료비심사결과 통지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송부해 드리게되나 진료비의 지급은 ① 직장, 직종조합은 연합회 본부(관리부), ② 공상을 포함한 공·교관리본은 관리공단본부(급여부), ③ 지역조합은 해당지역조합(다만, 지역조합의 3차 기관은 연합회본부), ④ 의료보호본은 종전대로 수진자 해당 시·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진료비의 심사결과에 대한 문의는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은 연합회 본부(심사과)로 의원급 요양기관은 연합회 지부(심사과)로 하며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여하는 진료비 지급차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그림 3. 진료비심사·지급체계〉



진료비 심사등의 이의신청

-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통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청구서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후에 문서로 당초 진료비를 청구하였던 곳으로 직송 또는 우송으로 제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연합회 본부 제심과, 지부 서무과, 해당지역조합, 다만 의료보호는 해당 시, 군에 제심청구) 제심청구된 건은 제심을 거친후에 정산진료비심사내역서와 함께 지급처에서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 정산진료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내용을 기재한 후에 관련 진료비명세서 및 정산진료비심사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여 직송 또는 우송의 방법으로 당초

기타 협조요망사항

- 1988년 1월부터 청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서의 요령대로 청구해야 하며 명세서가 혼합되어 합철되면 진료비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용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88년 1월 이전에 의료보호 및 공상을 포함하여 공·교관리공단에 접수된 진료비 명세서에 관련된 심사 및 지급문의는 공·교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 재로대구입 증빙서류는 진료비청구시 첨부하여 진료비명세서 접수처에 접수하면 됩니다.
-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간 지정 및 변경신고는 종전과 같이 지정관련 서류는 연합회 본부와 공·교관리공단 본부에서 처리하므로 관련서류를 각각 접수시켜야 합니다. (지역조합은 해당지역조합에서 지정)
- 진료비명세서 기재방법은 보건사회부에서 고시한 진료비청구서 및 명세서 기재요령에 의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타 진료비청구, 지급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연합회 (718-3151 (교) 292~296)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합회 본부 및 지부 소재지

구분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
본부	1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리동 168-9(의료보험회관)	718-3151
서울지부	1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리동 168-9(의료보험회관)	718-3151
부산지부	608	부산직할시 남구 광안동 89-18 (한국전자계산(주) 부산지사 3, 4층)	751-2101 -3 751-2062
대구지부	636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동 1248-1 (중소기업은행 비산동지점 4층)	-5 353-6861
광주지부	500	광주직할시 동구 중장로 4가 29-1 (무등상호신용금고 1, 2, 3층)	-6 366-7990 -5
대전지부	300	충남 대전시 중구 대흥동 501 (검암빌딩 6, 7층)	254-8619 255-2105

醫療保險請求樣式 一切 具備

- ◇ 市内는 電話注文으로 迅速配達
- ◇ 市外는 郵便注文(乙支路 4가우체국) 있으시면 즉시 郵送합니다.

注文처: 현대의학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대행기관)



서울·중구 인현동 2가 181-1 (세운빌딩 201호)

전화: 266-8398